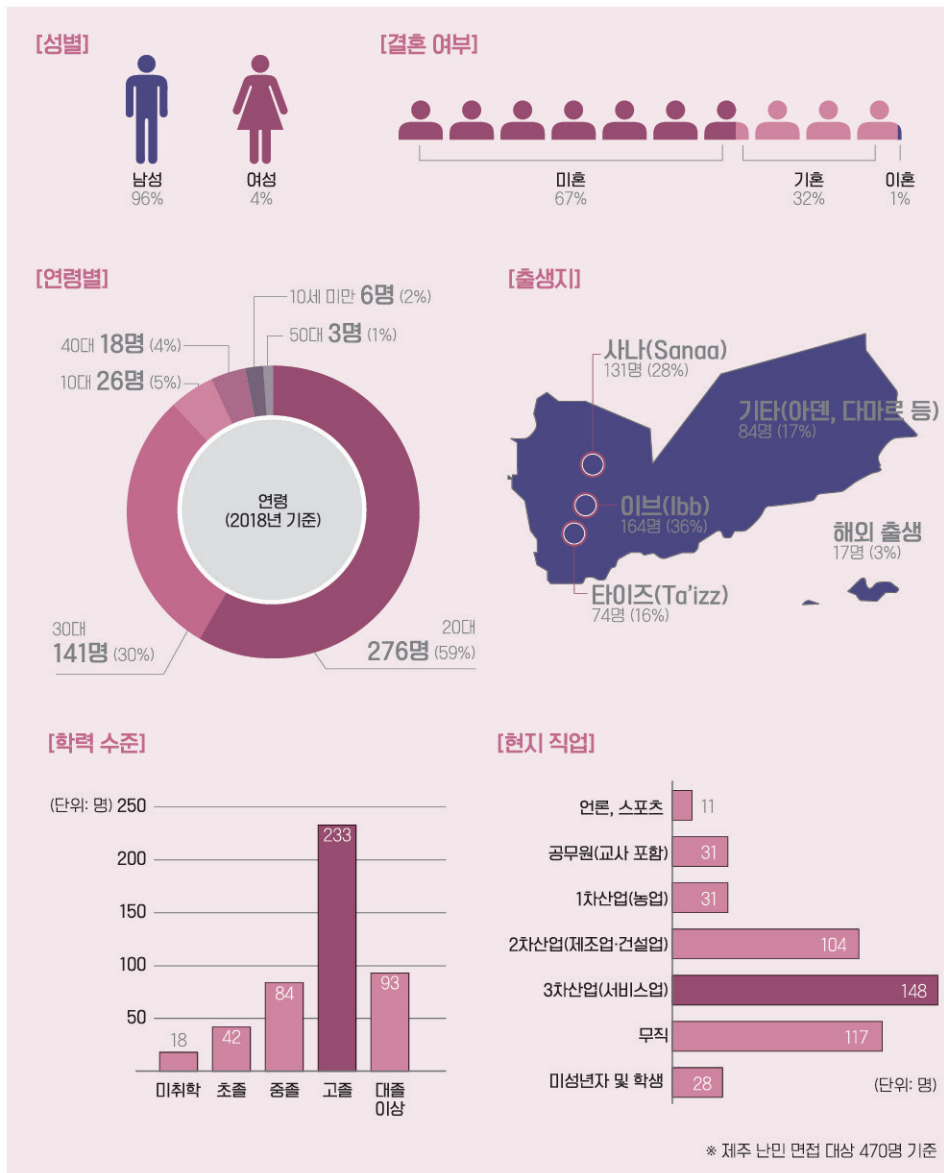


제3장 난민심사

그림 6 예멘인 프로필





난민심사 돌입

6월 25일. 난민심사가 시작되었다. 영유아 동반가족이나 임신부,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했을까? 앞서 청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장의 원칙론은 ‘출도제한 예멘인 난민심사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신청사유가 내전에만 기인하면 불인정하되 국가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독자적인 난민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을 깊이 따져본다. 자진출국자나 제3국에 안정적 거주가 인정되는 자는 인도적 고려 없이 단순 불인정한다. 테러, 범죄 관련 인물은 무엇보다 검증이 중요하다. 대사관과 국내외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알아본다.

심사 기간도 관건이다. 사안의 긴급성이 조직을 움직이게 했으니, 전국 각지에서 면접관과 통역원이 속속 집결하였다. 면접실도 5실로 확충하고 녹화장비도 갖추었다. 판이 짜여졌다.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향해 대장정에 들어갔다.

난민면접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질이나 삼자대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티 반군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대할 때면 반군을 소환해 대질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비해 검증할 방법은 제한되어 있으니 상대의 속이라도 탈탈 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문턱을 넘으려는 신청자와 가려내려는 면접관의 대면. 난민실에 들러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잠깐 들어보자.

여장부의 눈물

여성 혼자서 오다니. 그것도 20대의 앳된 나이에. 예멘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성 홀로 입국한 경우는 단 두 건이다. 그 중 지금 소개하려는 여성은 당차기가 그지없다. 난민실을 찾아와 이야기 하는 품새가 보통이 아니다.

“나는 아프고 돈도 없으니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 얼마나 당찬가. 당돌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몸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붉은색 히잡 사이로 비치는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뺨가를 잔뜩 껴입었는지 몸이 둔해 보인다. 후드점퍼와 치마로 가려진 배가 불룩하다. 홀몸이 아니었다. 임신 5개월의 몸을 하고 있었던 거다.

담당자는 이 여걸의 당당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상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꾼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니 끝내는 흐느껴 운다.

그 모습이 가련하기도 하거니와 남편을 어디에 두고 혼자 왔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대답이 영 시원찮다. “말레이시아에 있다, 예멘에 있다, 모르겠다.” 도통 신뢰가 안 간다. 말레이시아에서 8개월 머물다 왔으니 임신 5개월로 미루어 그곳에 남편이 있을 공산이 크지만, 제대로 밝히지를 않으니 접수 단계에서 더 묻기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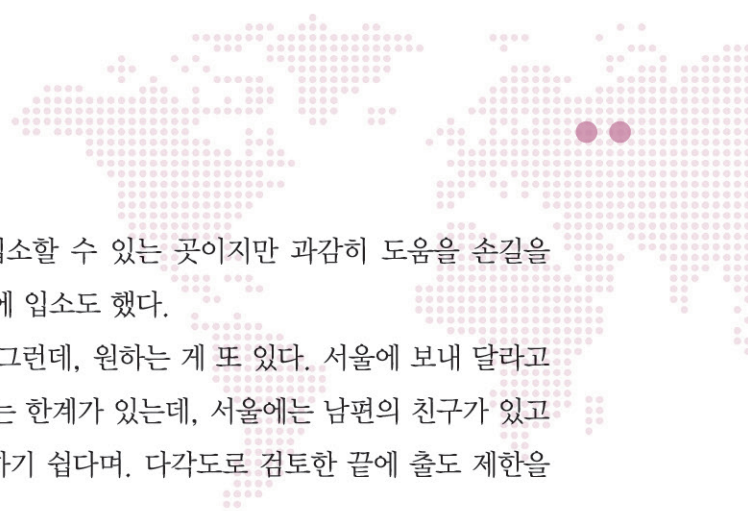
안색이 안 좋아 왜 그런지 물으니 배가 아프단다. 임신 때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신장결석이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바로 이 신장결석을 치료할 병원과 묵을 숙소를 구해 달라는 거였다.

난민실까지 온 사연은 이렇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쓰러진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니 신장결석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의료비가 없자 무료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퇴원시킨다. 그 다른 병원에 갔더니, 무료가 아니다. 난민실에 찾아와 당당하게 울먹거린 이유다.

놓인 처지가 어떠한지 파악해 보았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젊은 남성 3~4명이 숙소를 구해주고 휴대폰을 빌려주고 동행해주는 방식으로 살짝살짝 돕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도 여느 난민신청자와 다를 바 없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더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다.

이 여성이 난민실에서 보인 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었다. 도움은 구해야 하는데 자존심은 있어 당차게 나가다 결국 눈물을 쏟은 것이다.

취약한 상태를 방치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긴급구호를 결정하고 병원을 수소문하여 입원시켰다. 어렵사리 여성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만 입소할 수 있는 곳이지만 과감히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치료도 받고 심터에 입소도 했다.

제주청의 도움에 감사해 한다. 그런데, 원하는 게 또 있다. 서울에 보내 달라고 한다. 제주에서 도움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서울에는 남편의 친구가 있고 아랍 커뮤니티도 있어 도움을 구하기 쉽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출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첫 사례다.

서울에 가서는 메신저로 출산소식을 전해온다. 요구 사항이 또 이어진다. 남편을 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 예멘은 이제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다. 담당자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다. 난민신청 건은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 단순한 내전 사유를 들었으니 난민 인정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가족결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녀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내전의 공포와 이산가족의 슬픔. 어느 쪽이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일까.

형 찾아 삼만리

계획을 세운다고 어디 그대로만 흘러가던가. 6월 난민심사가 시작되면서, 면접 첫날 만난 사람부터가 면접관의 발길을 꼬이게 한다.

면접 대상자는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다. 신청서를 읽어보니 징집을 피해 혈혈단신으로 넘어왔다. 형제가 없다. 무슬림 세계에서 독자는 흔치 않은데! 신청서와 국가정황을 토대로 핵심문제를 뽑았다.

면접 당일. 대상자는 조금 일찍 와서 난민실에 대기하고 있다. 옆자리에도 누가 앉아 있다. 다른 면접관과 약속 잡은 사람이겠거니 대수롭잖게 여겼다.

그런데... 어라? 친 형이라고? 신청서에는 분명 형제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 없던 형이 땅에서 솟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 불쑥 나타나 “내가 네 형이다” 하지는 않았을 테고...

형이 한국에 있다고 밝히면 형에게 무슨 피해라도 갈까봐 그랬다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형이 두 명이나 있었다. 큰 형은 사우디에, 작은 형은 지금 옆자리에.

난민신청 사유는 이렇다. 2014년 후티 세력의 징집이 시작되자 큰형은 사우디로, 작은형은 한국으로 도망친다. 신청인이 16살 때의 일이다. 당시는 어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정이 달라진다. 2017년 후티 반군이 집에 찾아와 군 입대를 강요하자 해외 도피를 결행한다. 그러나 국제공항이 있는 남부의 아덴으로 가다가 반군의 불심검문에 걸려 구금을 당한다. 열흘째 되던 날 장갑차에 실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야음을 틈타 가까스로 도주한다. 어느 착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아덴에 도착하여 말레이시아 편에 몸을 싣는다.

장갑차에서의 도주나 귀인을 만난 진술은 매우 극적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주장일 뿐이다. 믿기가 조심스럽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처한 상황 자체가 극적이다. 상식을 넘어서 있다. 국가정황 자료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어난 사실만을 이야기해도 극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말이다. 본인이 겪은 공포와 위협이 강렬해 보이도록 다소 과장했을지는 모르나, 전체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작은 형에게 가고 싶어요.”

형은 서울에 터를 잡고 있었다. 형 찾아 먼 길을 날아왔으니 왜 안 그렇겠나. 출도 제한이 걸려서 가지 못할 뿐이지.

전쟁터로 변해버린 나라. 그런 나라에서 강제징집 당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겪는 공포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형제는 이역만리 한국에서 재회하였다. 난민 이름표를 붙인 채.



부부의 속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부부는 7쌍이다. 그 중 제주청을 제 집 드나들 듯 한 끝에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은 부부가 있었으니 절박하기가 남달랐음이라.

A씨 부부는 2015년 중순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었다. 결혼 후 부인도 사우디로 넘어갔다가 체류연장 비용이 비싸 2017년 말경 남편과 함께 귀국한다. 부인은 사우디에서 유산을 겪었다. 내전이 격화되면서 남편의 남동생이 폭격으로 사망한다. 남편에게도 강제 징집의 위협이 닥치고 부인이 다시 유산하자 부부는 예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부부가 살던 ‘타이즈’시는 정부군과 반군이 엇치락뒤치락 점령을 반복하고 있는 내전의 최대 격전지다. 2018년 4월 중순,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말레이시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2주 정도 머물다 한국이 난민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제주도까지 흘러 온 대강의 사연이다.

이들은 5월 초 입국하여 이틀 뒤 난민신청 했다.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제주청을 계속 찾아온다. 당시 제주청은 난민신청 폭증으로 임시사무실을 열어 접수를 받고 있던 때로, 사무실은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담당자는 방문자 응대와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로 정신없이 바쁘다. 이 와중에 부부가 직원에게 다가온다.

“돈이 떨어져서 먹지도 못해요. 잘 곳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내가 ‘Please~’를 연발한다. 영어를 못하는 남편은 만국공통어로 몸짓하며 아내의 말을 거든다. 입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도와달라니... 직원은 통장을 만들어 와서 생계비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부부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었다.²³⁾ 그렇게 물러서는가 싶더니 다음날 나타나서는 같은 부탁을 한다. 담당자는 NGO 활동가에게 전화하여 A씨 부부의 사정을 얘기하니 흔쾌히 돕겠다고 한다. 부부에게 활동가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도움을 청해보라고 하고

23) 당시 은행에서는 대포통장 문제가 있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어도 될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주청은 은행 측에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를 입금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몇몇 은행에서 양해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돌려보낸다. 그런데... 또 나타난다. 그 다음날도. 또... 출근부에 도장 찍듯 매일 와서 하릴없이 계단에 앉아 있곤 한다. 이제 안보이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할 정도다. 활동가에게 물으니 단지 금전적 지원을 요구해 달리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금전적 요구와 도울 방법, 이것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출도제한으로 발이 묶이고 돈이 바닥나고 있으니 제주에서의 호구지책이 필요하나, NGO 단체에서 일자리를 줄 수야 없는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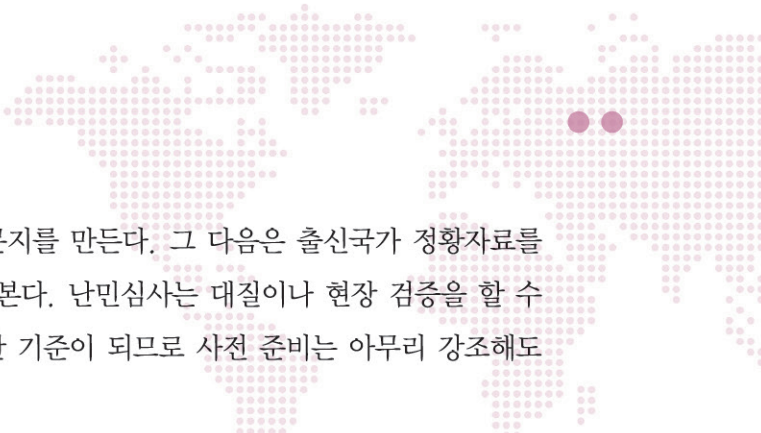
제주청은 예멘인의 초기 취업허가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승인한다.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임시사무실을 오가는 예멘인들은 일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한다. A씨 부부에게 희소식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부부는 두 번의 취업설명회에 참석하여 1차에서는 돌아섰고, 2차에서 식당 취업에 성공했다. 남편은 흑돼지구이식당, 부인은 국수전문점. 일터는 다르지만 식당이 가까이 위치하고 숙소는 업주가 한 곳에 마련해 주었다. 부부는 서귀포시로 거처를 옮겨 간 후 제주청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당시 예멘인 대부분이 이들 부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고, 노숙 문제도 연장선상에 있었다. 초기 취업허가 결정이 이례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 A씨 부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출도하지 않고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심사 결과표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규모 신청이다 보니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면접관 1명당 하루 최대 2명까지 면접심사를 한 덕에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1차 면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면접관은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여기서 탈락 시킨다는 말은 아니다. 면접 질문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면 된다. 면접관은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적어 놓은 내용은 사실인지



궁금한 점들을 체크하여 예상 질문지를 만든다. 그 다음은 출신국가 정황자료를 읽어보고 신청인의 처지에 견주어본다. 난민심사는 대질이나 현장 검증을 할 수 없어 응답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통역관을 섭외하고 면접일정을 조율해야 된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장비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면접실에 마주 앉았는데 녹취 녹화가 안 돼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은 면접. 문항은 많지만 결론은 셋 중 하나다. 인정,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는 불인정의 한 갈래지만 국가정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면접관은 ‘일관성과 신빙성’ 2개의 잣대를 들고 들어간다. 신청 동기와 경력,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신청인이 하는 말을 이 잣대로 측정하여 눈금이 기준에 미치는지 재본다. 거기에 국가정황을 더하면 결론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면접은 통상 3~4시간 동안 진행된다. 신청인들은 시치미를 잡아떼다 면접관의 질문에 이리저리 말 바꾸기를 하다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한 신청자는 반군 때문에 도망 왔다고 말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반군은 인간적이라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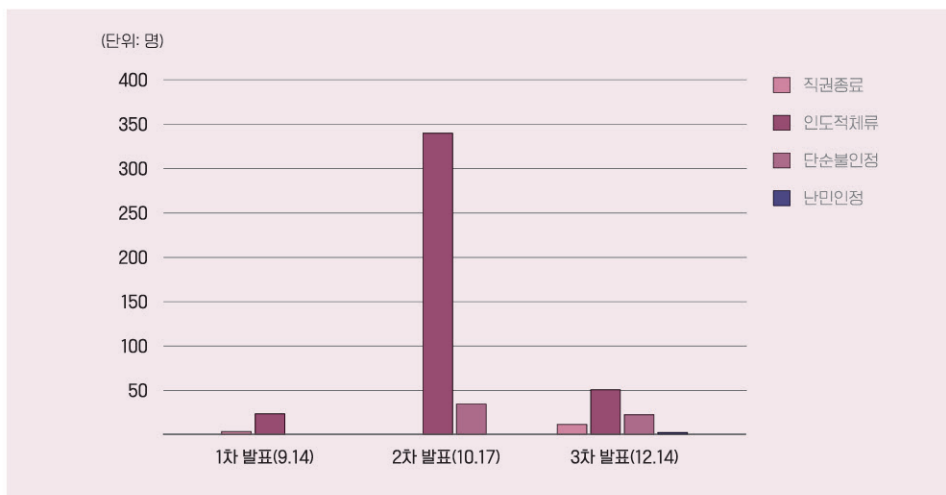
꼬리 물기 식 문답으로 진실에 접근해 가지만, 면접 한 번으로는 판가름내지 못할 때가 있다.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그 결정의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부합해야 하므로 추가 면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재면접은 처음보다 더 까다롭다. 사실 관계를 깊이 파헤쳐 들어가고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아서 그렇다. 2차 발표에서 보류한 8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주에 난민 신청한 490명 중 출도 해제자와 출국자를 제외한 47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출국자를 포함한 484명의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인정 2명, 불인정 56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직권종료 14명”

그림 7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484명)



신청자들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지만 불인정자는 당연히 고개를 가로짓는다. 난민인정 숫자를 보고 한국의 난민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난민 행정소송에서 인정자²⁴⁾는 1,000명당 2명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도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6월 25일 심사가 시작된 이래 세 번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차수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1차 발표

2018년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입국한 예멘 난민. 과연 언론의 표현처럼 ‘뜨거운 감자’일까.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건 아니다. 문제는 풀면 되는 것이다. 조금 많을 뿐이다. 그래서 나눠서 풀었다.

24) 난민법 제정 후 난민불인정취소소송 인정율: 2013년 5.8%, 2014년 1.7%, 2015년 0%, 2016년 0.1%, 2017년 0.1%, 2018년 0.2%(출처: 법무부 난민과)



9월 14일. 청장이 통역을 대동하고 연단에 섰다. 미리 연락을 받은 난민신청자 23명이 강당에 모여 앉았다. 청장의 입이 떨어진다.

“여러분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합니다.”

기다림 끝에 심사 결과를 받아든 23명은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다. 체류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출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색한다. 설문지에는 22명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표시했다.

제주청은 긴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선별해 우선 심사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환자들이다. 미성년자 10명도 포함되었다.

청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자들은 난민신청 현황, 23명의 체류기간 상한, 출도예정 인원 등에 대해 물었다. 특이할 점은 면접 종료자 440명 중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나머지 417명은 불허된 것으로 오인하는 기자나 단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제주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심사과정과 결정배경 그리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먼저 심사과정.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면접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조회하였다. 테러와 범죄 경력을 검증하고 마약검사도 병행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음은 결정배경.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5대 박해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 23명에게 출도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한다. 예멘 국가정황을 살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해주지 않는다.



1차 난민심사 결과 발표 (9. 14)

2차 발표

1차 때, ‘곧’ 2차 발표가 뒤따를 거라고 했다. 한 달이 지났다. ‘곧’이 한 달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카카오톡 테러제보’ 사건 조사도 있었지만 페이스북 전수조사 결과 총기 소지자와 카트 섭취자, 테러단체 추종 의심자가 나왔다.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나 하루 이틀에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보류자로 분류해 계속 조사하기로 하고 2차 발표 날짜를 잡았다.

10월 17일 제주청 대강당. 이번에는 정보에 목말라하는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40여명의 기자가 자리를 메우고 있다. 청장이 연단에 섰다.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가운데 458명을 심사하여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85명은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청장이 밝힌 각 사안별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는 불인정했으나,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구급 가능성을 고려했다.



2차 난민심사 결과 발표 (10. 17)

다음은 단순 불인정자.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 곳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자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자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마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4명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류자. 일시 출국하거나 조업 관계로 면접에 응하지 못한 자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자들은 3차 심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청장이 보류자 가운데 일부 난민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도 있어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히자 기자들은 3차 심사에서 인정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보류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매체에서 불인정자들은 SNS에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글이나 총을 든 사진, 마약하는 사진을 올려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렇지 않다. 총기 소지와 카트 섭취는 예멘의 일상 문화라는 중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다만, 예멘에서의 총기 소지가 테러 활동과 상관있는지 여부는 밝혀야 하므로 재심사 하였고, 의심이 가는 자는 보류했다. 물론 국내에서의 카트 섭취는 불법이므로 수사기관에 검사의뢰 하였다.

발표 내용을 두고 난민 찬·반 단체 양쪽 다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단체는 난민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불인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사 하라고 촉구했다. 난민 반대단체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발표 다음날 40여 명이 제주청을 찾아와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하였다.

숙식을 제공하던 지역단체들은 인도적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여비를 마련한 후에 나갈 것을 권했으나 소용없었다. 잇따른 출도 행렬로 발표 전 36곳에 달하던 체류지가 발표 후 21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청은 두 번으로 나눠 심사결과를 통지했다. 먼저 10월 22일부터 3일 동안은 인도적 허가자를 불러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처우에 대해 교육했다. 곧이어 불인정자를 불렀다. 예멘인들 사이에서는 제주청에서 언제 부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먼저 부르면 인도적 허가, 뒤에 부르면 불인정. 이들에게 결과를 통지하자 일부는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흥분하거나 흐느끼기도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자 모두들 반색하며 면접조서 복사를 요청하였다.



2차 심사결과 통지 및 교육 (10. 22)

최종 발표

2차에서 인도적 허가를 받은 자들은 고용주의 고충 거리가 되고 있었다.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말없이 출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예멘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갔다. 취업설명회 이후 꾸준히 2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가 2차 발표를 기점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2차 발표 뒤 설문조사에서 252명이 출도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취업 시장은 요동쳤지만 우려하던

강력 범죄는 발생하지 않아 도민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제주청은 보류자 85명에 대한 추가 심사에 들어갔다. 출국자 11명은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입국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어선에 취업한 5명은 조업이 없는 날을 잡아 제주청에 방문하여 면접을 치렀다. 나머지는 정밀심사 대상자다.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가 있는지 깊이 파고들었다.

12월 초,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도 내렸다. 최종발표 날짜를 12월 14일로 잡았다.

발표 몇 시간 전, 'KBS 뉴스광장 1부'에서 특파원 보도 하나를 내보냈다.

“예멘 정부-반군 ‘호데이다’ 휴전 합의...내전 종식 물꼬”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낳으며 4년째 내전을 이어오던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접전지 호데이다 항구도시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발표하기도 전에 전화가 빗발친다. ‘휴전 했다, 다 돌려보내라’, ‘총알 안 날아 다니는데 왜 안돌려 보내나.’

12월 14일 11시 제주청 대강당. 청장이 기자단을 앞에 두고 최종발표를 했다.

“제주청은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난민심사 결과 최종발표 (12. 14)

청장은 심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테러혐의자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가정황 조사를 거쳤고 중동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결정 이유도 밝혔다.

“난민 인정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향후에도 박해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내전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 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참석 기자단의 질문이 이어진다. 아침 뉴스에 나온 휴전협정 보도를 언급하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청장은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정세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자들은 난민 인정받은 두 명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그들과의 인터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두 명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주청 야외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물론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음 주부터 인정자와 인도적 허가자를 불러 법질서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시키고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밟았다. 교육에는 한라대 김대용 교수가 수고해주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어쩌다 제주도가 예멘인의 희망봉이 되었을까?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무슬림 무리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홀연히 날아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우리 사회는 이들의 느닷없는 도래에 어지간히도 요란한 한 해를 보냈다. 그 한가운데에선 제주청, 깃발을 내걸었다. ‘법과 원칙’ 네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있지 않다.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주청은 난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8년을 관통하는 이슈의 중심에 서서 역량을 총동원해 난관을 헤쳐 나갔다. 꽃길이지 아니었기에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찢리며 지나왔다. 그 돌부리와 가시가 먼 기억 속의 추억으로만 남는다면 다음에 또 채이고 또 찢린다. 이제, 잠시 숨 고를 시간을 갖고 지나온 길을 되짚어본다.

남은 과제

국가기관은 저마다의 존립 이유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청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공항심사나 불법체류자 단속 정도일 텐데, 2018년 10대 뉴스²⁵⁾에 난민이 꼽혔으니 이제 출입국하면 난민도 떠올릴 만하다.

제주청은 예멘 난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했다. 안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갔고, 밖으로는 협조와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었다.

하지만 제주청의 행보에 모두가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준 것은 아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마주해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언론에서는 취재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보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업주는 예멘인 고용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시행착오의 축적이 도약을 만든다고, 도약을 위한 해결 과제가 여럿 남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

25) [연합뉴스 선정 2018 국제뉴스] 지중해부터 제주까지 번진 '난민 앓이'.

[뉴스포스트 2018 사회 10대 뉴스⑥]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갈등 심화.

[일요서울 2018 아두] 예멘 난민 문제에 제주-전국 '들썩'.

[한겨레 선정 지역 10대 뉴스] 예멘인 집단 입국으로 불붙은 난민 논쟁.

[주간경향 2018년 10대 사건들] 예멘 난민 논란. 그 외 다수의 언론에서 2018년 10대 뉴스로 예멘 난민을 선정하였다.

무사증입국 제도 존폐 논란

4월 중순, 심사과에서 난민신청자의 거주지역을 제주로 제한하고, 근본적으로는 예멘을 제주무사증국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정보보고가 잇따랐고, 본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출도제한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4월 말 지시²⁶⁾에 따라 난민신청 후 출도하는 행태는 저지되었다. 하지만 무사증국가 제외 여부는 법적 검토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렸다. 그 사이 대규모 입국은 계속되었다. 결국 6월이 되어서야 예멘인의 무사증 입국이 차단되었지만, 이미 입국한 예멘인 숫자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예멘인 3명이 출도제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며칠 후 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²⁷⁾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소송을 취하하여 사안 종결되었다.²⁸⁾

예멘을 제주 무사증입국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찬반 논란이 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사증입국 제도의 존폐로까지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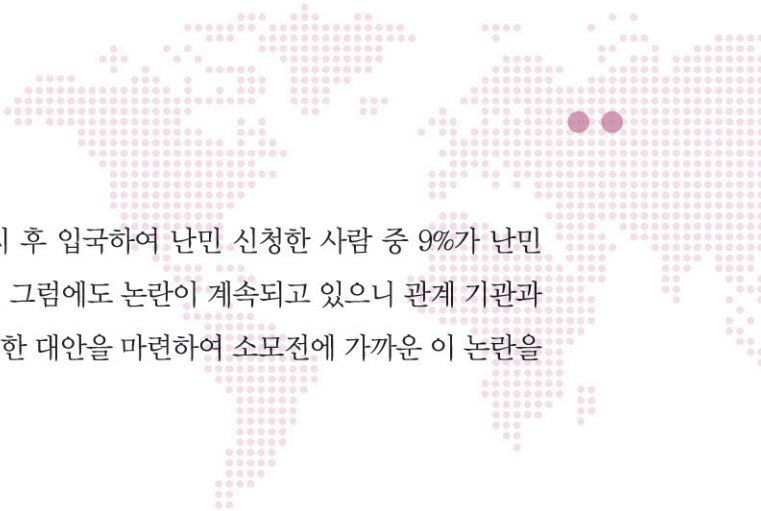
무사증입국 제도의 존폐 문제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불거졌는데 난민이 불을 지폈다. 무사증입국 제도는 앞서 언급했듯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가 된다고 하여 제도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 이는 관광객을 받지 말자는 얘기인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된다. 2018년 8월, 법무부는 기존 12개 국가에 더해 12개 나라를 제주무사증 입국불허국가로 추가 지정²⁹⁾했다. 무사증 제외와 출도제한으로 난민의 제도 악용 시도는 상당 부분

26) 제주무사증 입국자가 난민신청 하는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출도 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 심사를 거쳐 제한 해제.

27) 제주청장을 상대로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의 취소' 소송 제기. 법무부장관의 처분이므로 제주청장은 피고 적격이 없음.

28) 2건의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처분청이 법무부장관이므로 피고 결정되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됨. 2건 모두 원고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 소 취하하여 종결됨.

29)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추가: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네팔, 세네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키르기즈.



차단되고 있다. 실제 출도제한 조치 후 입국하여 난민 신청한 사람 중 9%가 난민 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소모전에 가까운 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하겠다.

NGO와의 관계

난민 반대단체는 두 말할 필요도 없겠고, 인권단체라고 하여 제주청의 결정을 지지한 건 아니다. 세 차례의 심사결과 발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제주청의 범죄경력 조회와 마약검사는 난민 신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한 마디로 인권침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단연코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 조회는 한국 입국 전 체류하였던 제3국에서의 범죄 유무를, 소변검사는 마약 중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둘 다 본인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였으니 난민법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조항³⁰⁾ 위반이 아니다.

범죄자는 난민인정 배제 대상³¹⁾이고, 마약 복용자는 강제퇴거 대상이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를 우리 사회에 발 들여놓게 할 수는 없다.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있다. 난민신청자를 어떻게 처우하고 NGO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처우전문가 양성과 NGO와의 협업,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처우는 생계비와 주거시설 지원, 기초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지원, 미성년자의

30) 난민법 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①항 :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항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1)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생략)

초중등교육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취업허가도 처우에 속하기는 하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도이므로, 원조에 가까운 지원과는 결이 다르다.

제주청이 예멘인 문제와 마주한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바로 이 처우다. 예멘인들은 제주청으로 매일 몰려와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잘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난민법에는 이 삼중고를 해결하라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당해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500명을 먹이고 재우기에 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통한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출입국기관도 처우에 정통한 담당자가 나서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그동안 심사전문가 육성에는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처우전문가로 불릴 만한 인재를 양성하지는 않았다. 난민신청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처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처우를 걸가지가 아니라 줄기로 보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처우전문가가 할 일은 많다. 개인별 파일을 만들어 취업처와 체류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업데이트 하고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제주청은 폭행 피해자, 특정지역(00군) 체류자 등 특이자들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고충 상담도 중요한 임무다. 작은 불만이 쌓이고 쌓여 대형 사고로 증폭된다는 사실을 유럽의 난민사태를 거울삼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난민 지원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처우전문가의 몫이다. 처우전문가는 관할의 난민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훤히 꿰고 있어야 한다.

NGO와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서 상당한 영역을 이루고 있어 외부와의 연계가 긴요하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적십자, UNHCR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구, 단체와 네트워크화 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호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초반에는 민간의 난민지원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제주이주민 센터와 천주교 이주사목센터 정도가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예멘 문제가



발생하자 난민 지원단체로 신속히 전환하였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흩어져 있던 여러 단체가 통합되고 개인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짧은 기간에 민간 영역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청은 자원봉사와 의료봉사 단체, 종교계, 개인 독지기들과 연계하고 또 상호 연계를 주선하면서 그물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렇게 민간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초반에 겪었던 처우 업무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난민 처우는 NGO와 협업해야 시너지가 커진다.

그동안 제주청과 인권단체는 지향점이 달라 각을 세워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양측은 일대 전기를 맞았다. 예멘인을 두고 제주청은 안정적 정착에, 인권단체는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럼에도 실현 방법은 다르지 않았으니, 같은 방향을 향해 뜻을 모았다. 손잡고 소통하고 동행했다. 제주청, 아니 출입국 역사를 통틀어 이번처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

민과 관은 영역이 다르니 경계는 뚜렷하나 넘나들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 경계는 장벽이 아니라 통문이 되어야 할 터. 이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는 바로 공감이었다. 적어도 제주의 사례에서는 그랬다. 서로 금을 긋고 각을 세운 게 아니라 난민문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풀어 나갔다. 금 긋기를 멈추고 서로의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였다. 빗장을 걷어내니 협력의 물꼬가 트여 연대하고 제후했다.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다.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상을 기획해봐야 한다. 협업의 영역을 발굴하고 확장하여 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겠다.

언론보도 유감

12월 14일, 3차 심사결과 발표가 있던 날. 발표 시간은 11시. 보도 자료를 9시 30분에 미리 배포하면서 11시까지 엠바고를 걸었다. 그런데, 배포한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네이버 메인에 뉴스가 하나 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인 2명 난민인정.’ 엠바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언론사의 전화가 빗발쳤다. “두 명이 누구냐, 취재하게 해 달라.” 이뿐이라. 민원 전화가 그야말로 폭주했다. 결국 엠바고는 풀려버렸다. 아직 발표도 안했는데... 취재경쟁이야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은가. 기사 한 부분을 보자.

“발이 묶인 500여 명은 한 달 만에 노숙인 신세가 됐다.”³²⁾

극히 일부가 잠깐 동안 노숙한 사실은 있지만 난민신청자 전체가 노숙인 신세가 되었다고 하니, 과장이 지나치다. 이런 기사를 보고 누가 편안히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난민 심사가 지체되고 제주도 밖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노숙 시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³³⁾

7월 20일자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6월에 간헐적인 노숙 시도는 있었지만 7월 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청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예멘인 모두가 숙소를 마련한 때문이다.

제주청은 예멘 난민 유입 시점부터 언론의 취재 요청을 줄기차게 받아왔고, 그때마다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하기도 했다.

“정부에 의해 가짜 난민으로 판명난 이들이 즉각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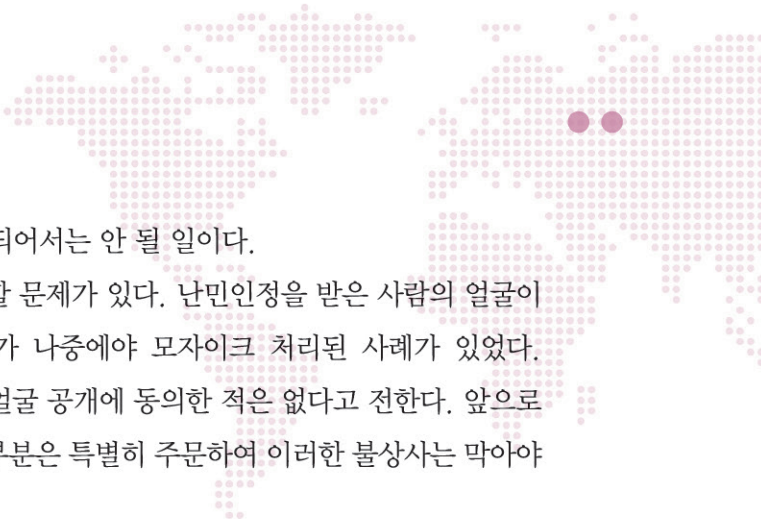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여 표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만, 기사화 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 회신 자료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나 개념은 상세한 설명을 달아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위 예와 같이 인도적

32) 6월 16일자 한국일보의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 인터넷 기사 내용 중.

33) 7월 20일자 중앙일보의 ‘제주 예멘난민 길에 나가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 중.

34) 9월 14일자 세계일보의 ‘사실상 가짜 난민 판명… 출도제한 해제 새 쟁점’ 기사 내용 중.



체류허가자가 가짜 난민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인터넷 신문에 여과 없이 실렸다가 나중에야 모자이크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당사자는 인터뷰에는 동의했지만 얼굴 공개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전한다. 앞으로 언론을 대할 때 난민의 신상 공개 부분은 특별히 주문하여 이러한 불상사는 막아야 하겠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취업제한을 풀어주고 두 차례 취업지원을 한 게 전부라는 등 비판적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 7월 초,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으로부터 색다른 질문 하나를 받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주청이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인 문제를 두고 경험을 논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공영 라디오방송 「ARD」도 난민들이 얼마나 제주에 왔는지, 온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요청을 했는데, 해외 언론은 예멘 난민의 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취업지원, 이상과 현실

파격 변신한 제주청. 2018년의 제주청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겠다’고. 유례없는 대규모 난민 신청을 맞아 제주청은 면모를 일신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펼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취업지원이다. 시행 배경은 앞서 언급했듯 정착지원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다.

제주청은 두 차례의 취업설명회를 열었는데, 이색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대강당은 구인·구직자,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제주청의 설명이 끝나자 강당, 복도, 앞마당, 잔디밭 할 거 없이 청사 전체가 면접장소로 변했다. 사업주와 예멘인은 청사 곳곳에서 서로를 탐색했고, 구직자들은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한 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잔디밭 여기저기 둘러 앉아 구호단체에서 나눠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도 시간이 되면 바닥에 천 조각을 깔았다.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적십자 의료지원센터에는 두어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국제 인력시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 결과, 출도 제한된 예멘인의 80%가 사업주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울림마당만이 아니었다.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업주와 예멘인은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며 제주청에 수시로 전화하여 통역을 요구하였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드러났다. 고용주는 한창 일할 시간에 예멘인이 기도하러 네댓 번씩 사라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고용 환경에 대한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예멘인은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안준다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요구하고, 고용주는 예멘인이 말도 없이 그만둬 버린다고 더 이상 못쓰겠다고 한다. 급기야는 떠밀리다시피 하여 받았는데 막상 써보니 실망스럽다며 제주청에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

사후 관리에 나섰다. 취업자들을 불러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중재하였다. 고용주를 상대로 이슬람문화도 설명하였다. 아랍어 통역원은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그러자 불평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상은 정작, 현실은 갈등. 이 간극을 메운 묘안은 다름 아닌 상호이해였다. 교육과 소통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고,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는 한 꺼풀씩 벗겨져 나갔다.

제주청의 선례가 모범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기틀을 만들고 다듬어 유사 사례에 길잡이로 활용해볼 만하다. 이번에 유용하게 쓰인 ‘한국 생활정보 안내’ 책자와 문화교육 자료를 국적별로 만들어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관리 체계를 세워 놓으면 비슷한 일이 닥치더라도 너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생활정보 안내 책자

취업지원은 출입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총칼을 피해서든 싹둑이 비어서든 어쨌든 와서 난민신청 했으니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 문제는 난민신청자는 취업을 당연한 필수과목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취업관리를 선택과목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신청자의 취업에 업종 제한³⁵⁾은 거의 없다.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은 학업의 계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계 지어져 있으니 비길 바 못되고, 고용허가제도 특정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으니 옮기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취업가능 업종만 놓고 보면 결혼동거나 외국적동포 자격에 가깝다. 그만큼 취업영역이 넓고 다양하다. 이러함에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은 그 자격의 부수적 활동으로만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틈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난민은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인 만큼 관리도 특별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신청자도 외국 인력에 준해 취업 관리하자는 거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의무 법제화, 취업허가 제도 정비, 국내 고용시장과의 상관관계 연구.

난민법의 취업허가 조항³⁶⁾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35) 취업제한 분야: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접객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개인과의 교습행위 등

36) 법 제40조 2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니, 난민심사가 그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호구지책을 마련해 준 것이다. 생계비 지원과 취업허가가 맞물려 있다.

난민심사의 현실은 어떤가. 신청 증가로 6개월 내 종결은 버거운 실정이다. 난민신청자는 또 어떠한가. 여섯 달 동안 생계비를 받으며 아무 일도 안하고 기다리기만 할까?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십중팔구는 그 전에도 일한다. 잡아서 처벌한다지만 능사가 아니다. 이에 더해 난민법 시행 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자들이 늘었다.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과 법 규정의 괴리가 발생한다.

심사기간을 단축할 특단의 조치가 나오고 신청자에 비례한 생계비 예산을 확보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취업허가 기준을 완화하든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세우든 이 비정상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결눈질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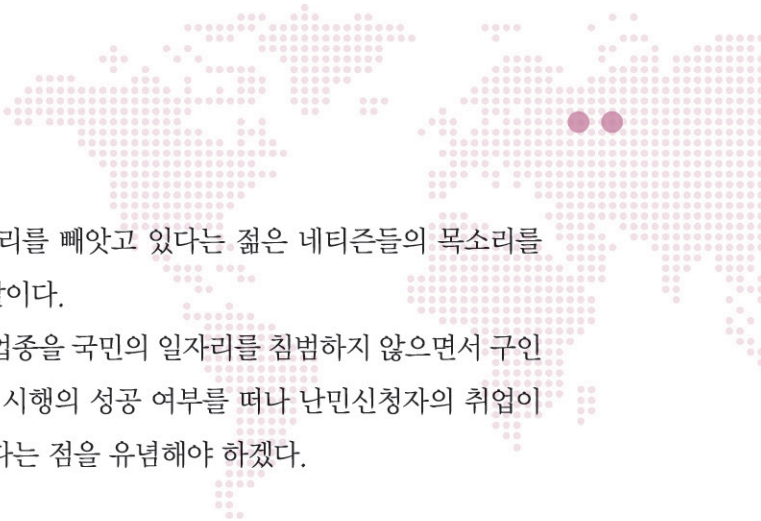
제주청은 6개월 유예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넘어가고, 예멘인의 취업지원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다른 국적의 난민신청자, 특히 인도인들의 취업허가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이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시비를 차단하고 난민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정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선진 사례³⁷⁾를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자의 취업과 국내 노동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대표적인 취업 자격인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외국인력정책 위원회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국가별 쿼터를 정해 인력을 도입한다.

난민신청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만 16,173명이 신청했다. 이는 E-9자격 전체(280,312명)의 6%에 달한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히

37) 캐나다의 난민 취업 허가: 난민 신청 후 이민난민시민권국(CIC)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아 인적자원기술통발부서(HRSDC)에 제출하여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는다.(출처: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 시설과 사회통합 연구)



의미 있는 수치다. 난민이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젊은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제주청은 취업설명회를 하면서 업종을 국민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구인 수요가 있는 1차 산업으로 정했다. 시행의 성공 여부를 떠나 난민신청자의 취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난민심사의 미래상

난민심사는 접수, 면접,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심사계획을 세우는데, 순탄하지만은 않다. 문제가 나타난다. 각 단계별로 살펴 보겠다.

먼저 접수 단계. 난민신청서 부실기재 문제가 가장 크다. 아랍어와 영어 두 양식의 신청서를 나눠주었는데, 제출 받은 신청서를 들춰보면 요지경이다. 아랍어 서류는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쓰고, 질문은 다른데 같은 답을 계속 적어 넣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영어 서류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나마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빈 칸을 꼼꼼히 채워놓기는 한데, 읽어내기가 힘들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지인에게 대신 적게 하였으니, 역시 독해가 난해하다. 물론 내용도 부실하다.

면접관은 신청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든다. 내용이 부실하면 사전 조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자연히 면접시간도 길어진다. 불필요한 문답이 오가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신청서 배부와 접수 단계에서 설명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특히, 박해와 관련된 내용은 접수할 때 살펴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케 한다면 부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신청서만 나눠줄 게 아니라 ‘작성 방법 안내문’을 해당국 언어로 만들어 함께 배부하는 방안도 그럴 듯하다. 안내문에 따라 적는다면 무지로 인한 부실 기재를 줄일 수 있고, 주위의 도움 없이도 신청자 스스로 작성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면접 단계.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일정 잡기의 어려움과 면담 내용의 노출이 그것이다. 먼저, 일정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 제주청은 500명에

육박하는 예멘인을 신속 심사하기 위해 1주에서 10일 단위의 면접 일정표를 만들었다. 담당직원이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한 결과다. 미취업자와의 일정 조율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취업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양편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날짜가 나온다. 어선 종사자는 먼 바다에 나가 있어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겨우겨우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사달이 난다. 면접 당일 대뜸 전화해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늦게 오거나, 날짜를 잘못 알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다. 연락도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정이 어그러지고, 다른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 “너무 빠졌다”는 담당자의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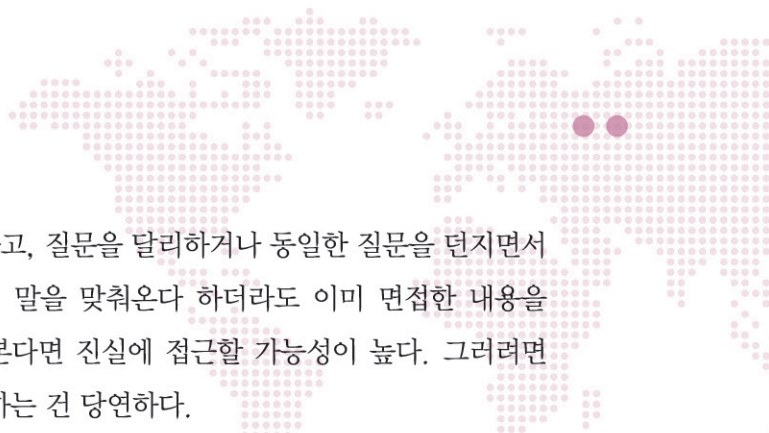
대규모 난민신청 vs 개별 일정조율. 묘안은 없을까? 담당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과제로 남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난민면접실. 모범답안이라도 나왔던 걸까? 날이 갈수록 신청자는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술술 답한다. 막힘이 없다. ‘뭘 소리를 들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왜 그럴까 추정해 보았다. 신청자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 같이 온 친구나 일행들은 같은 숙소에 머문다. 먼저 면접을 받은 사람은 숙소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SNS로도 퍼뜨린다. 질문 내용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다. 모범답안이 나온다. 그에 따라 면접관의 히든카드는 맑고도 투명해진다.

공항에서는 일행을 동시에 분리 면담하는 방식으로 말맞추기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다. 이는 소수일 때 통하는 방식이고, 대규모일 때는 얘기가 다르다. 같은 숙소에 머문다고 죄다 불러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SNS는 또 무슨 수로 막겠는가.

범죄나 테러 혐의자는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국익 위해 분자다. 말맞추기가 특별히 문제 되는 사람들이다. 가령, 제3국에서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며 못된 짓을 하다가 제주로 몰려와 난민신청 했다고 치자. 정황은 있으나 서로 말을 맞추고 딱 잡아 떼버리면 아무리 유능한 면접관이라도 밝혀내기 어렵다.

나름의 대안은 이렇다. 면접관 한 명이 일행을 전담 심사하는 방식이다. 일행



전체에 대한 통일적 접근이 가능하고, 질문을 달리하거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술 일치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말을 맞춰온다 하더라도 이미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각도에서 허를 찌러본다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접수할 때 일행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면접기법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청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때인 만큼 출입국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결정 단계. 해외 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다. 제주청은 1차 면접은 끝났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했던 85명에 대해 재 면담과 사실검증을 병행하였다. 테러, 범죄 혐의자 확인을 위해 해외 대사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국내외 수사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보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다. 회신이 늦어지면서 심사 결정도 늦춰졌다. 이번을 계기로 외교안보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 지연 처리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덧붙여, 대사관과 관계기관, KOTRA, KOICA 같은 해외 주재 기구, 단체 직원과의 비상연락망, 즉 핫라인 구축도 검토해 볼 만하다. 면접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곧바로 전화 문의하여 현지 정보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한다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예멘에서는 이발사가 ‘3대 천시 직종’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 현지에 묻고 싶었다.

안내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불인정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제주청은 인도적 허가자를 불러 모아 불허 사유를 설명하였다. 개별 통지한 ‘불인정결정사유서’에도 사유가 아랍어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어쨌거나 시비가 일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통지서를 교부할 때 결정 사유를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충분한 안내가 될 것이다.

예멘인 난민심사는 이왕의 방식과는 다르게, 다시 말해 틀을 완전히 바꾸어 진행했다. 그래야 했던 이유가 있다. 총 561명이 입국해 549명이 난민신청 했는데 그 중 484명³⁸⁾이 제주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들을 3개월 안에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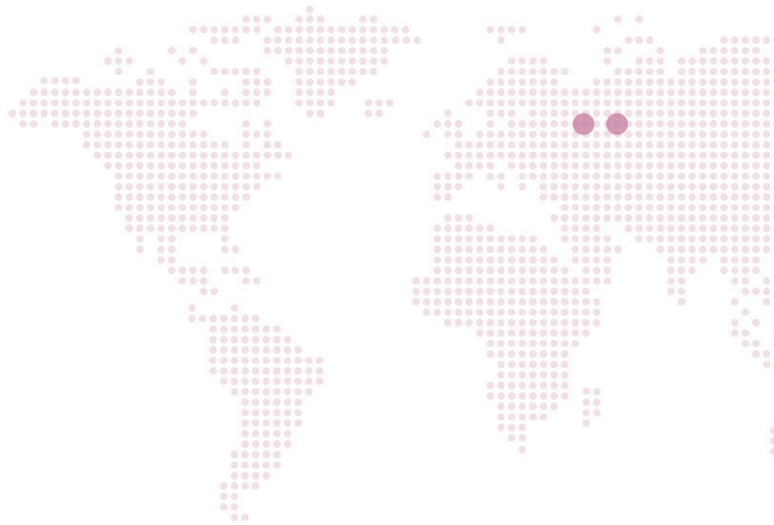
38) 난민신청자 549명 중 59명은 출도제한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7명은 인도적 사유로 출도 제한 해제하였다. 여기에 제주에서 출생한 아기(제민)가 더해져 제주청 심사대상자는 484명이 되었다.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기존의 접수 순서별 개별적 심사방식은 걸맞지 않았다. 난민심사는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적체 건수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시일 안에 끝내기란 쉽지 않다. 심사관이 부족한 마당에 난민 신청은 넘쳐나니 심사관은 먼저 접수된 건부터 집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적체가 적체를 낳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이런 틀로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모자랄 판이다.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그룹별 범주화 방식이다. 484명을 한 단위로 묶어 박해사유별, 제3국 경유지별, 가족·일행별, 그 외의 여러 그룹으로 대분류한 다음 정밀심사나 신속심사 대상으로 등으로 세분류하였다. 여기에 심사관 투입인원 대비 면접시간을 산출하여 주간, 월간 심사일정표를 짰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린 것이다. 이 틀은 비교 분석하고 통일성을 기하는데 유용하다. 즉 비슷한 상황을 주장하는 자들의 면접조서를 취합해 비교 분석한 뒤 동일한 사안이면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혼자만 탄 소리 한다면 쉬이 걸러낼 수도 있다.

제주청이 시행한 방법은 외적인 변수가 제거된 상황, 즉 예멘 무사증국가 제외로 예멘인 추가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가능했던 면이 있지만, 다른 국적의 일반적인 난민심사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 3~6개월 기간의 신청 건을 한 단위로 묶어 사안별로 분류하고 세분화한 다음 유사 건을 한 심사관에게 전담 배정하는 것이다. 개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청의 방식을 혼용한다면 심사 효율이 높아지리라 본다.

2018년 한 해 대한민국에 난민 화두를 던진 예멘인. 이들을 맞아 출입국은 조직 전체가 움직였다. 청장이 지휘봉을 들었고 새로이 구성된 단원들은 지휘에 맞춰 하모니를 이뤄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내렸다. 파견 온 심사관과 통역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대 복귀했다. 제주청 직원들도 미뤄 두었던 업무를 다시 집어들었다. 특히 예멘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했던 관리과장과 아랍어 통역원은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되찾았다. 어찌 소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난민심사팀의 토크(Talk Talk)

— □ ×



심사관 안○○

예멘 난민은 신청 사유가 까다로워 버거웠는데, 심사관과 매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제주 난민은 우리 조직의 위기이자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조 실장님은 예멘인 심사 어떠셨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디만, 난민심사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대략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디다. 이번 제주에서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듯 합니다. 오 계장님은 유능하시니까 큰 무리 없으셨죠?



심사관 조○○



심사관 오○○

아유... 무슨 말씀요. 저는 여러 선배님들의 면접조서를 많이 참고하였습디다. 아~ 이럴 땐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등등. 국가적 사안 해결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선후 배님들이 계셨기에 힘들었지만 나를 보람도 느꼈어요. 김반장님. 통역 힘들셨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긴장도 되었지만 선배님들의 재치 있는 입담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디다. 통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바짝 썼어요. 예멘인들... 낯설게만 보였는데 이제 친근한 느낌마저 드니 아이러니 하네요. 정반장님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죠?



아랍어 통역 김○○



아랍어 통역 점○○

저는 임용과 동시에 갑작스레 통역요원으로 파견 받아 왔는데, 난민통역은 생소한 분야라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담감이 컸어요. 다행히 동기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부담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디다. 제주청은 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어느덧 훌쩍 성장한 느낌!! 백 반장님은 빨리 적응하셨죠?

전송



난민심사팀의 토크(Talk Talk)

— □ ×



적응이라... 아랍어는 중동 22개국이 사용하는 언어지만, 국가별 방언 차이가 심해 예멘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동기들과 매일 모여 난민심사에 유용한 아랍어 단어를 익혔는데 그 단어들을 다시 써먹을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아랍통 이반장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아랍어 통역
백○○



아랍어 통역
이○○

저는 통역 외에도 숙소와 일자리 현장을 두루 방문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관리도 쉽지는 않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민원현장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둘러 쌓여 항의 받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임 반장님, 일정 관리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매일 10건이 넘는 심사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여나 예멘인들이 지정된 일자에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도 했어요. 가족단위로 온 예멘인들.. 특히 아이들이 난민실에 들어설 때 짓던 애틋한 미소가 기억에 남네요. 이 팀장님은 총괄업무 어떠셨나요?



난민담당
임○○



난민팀장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창일 때 제주청도 역사의 현장에 섰지요. 총괄 팀장으로서 예멘인들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게 되었네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강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죠?

마약검사 키트를 들고 제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새롭네요. 각종 토론회와 회의 참석, 항의방문자 응대, 취업 설명회와 한국 문화교육 강사... 참 다양한 일들과 마주했군요. 유례없는 일을 맞아 조직 전체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모두들 수고하셨고, 특히 지원근무 오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리과장
강○○

전송



에필로그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에, 이들을 두고 우리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반응했다. ‘배척과 포용’ 두 쪽으로 갈려서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오고갔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범죄자와 동의하고, 예멘 난민 수용은 미래에 일어날 테러와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배척의 깃발을 휘저었다. 난민반대 국민청원은 그전의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우며 역대 최다 동의를 얻어냈다. 여론몰이로 동력을 얻은 배척론자들은 집회와 그 밖의 다양한 경로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진영이 내건 깃발에는 ‘가짜난민 OUT’ 글귀가 선명하다.

‘분단과 전쟁으로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몸을 맡겨야 했던 아픔의 현대사를 겪어 왔던 만큼, 이제 우리도 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포용의 기치를 내걸었다. 난민을 돕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독지가들이 줄을 이었다. 포용론자들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구심점을 잡은 다음 체계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진영에는 ‘인종 차별 OUT’ 깃발이 나부낀다.

길은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 움직인다. 제주청의 심사결과 방이 나붙을 때마다 양 진영은 출정식을 갖고 광장으로 진군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친 두 패는 팽팽히 맞서며 대의명분 대결을 펼치는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은 다음 철군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렇다고 남는 게 없지는 않다. 법무부에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사증입국 제도도 손 봤으니 말이다.

양 극단의 모습을 마주한 피란민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주청은 이들을 관리하느라 땀 깨나 쏟았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이 따로 없었다.

허구한 날 민원전화가 울려댄다. 받으면 욕먹기 일쑤다.

“어디어디서 노숙하는 인간들 뭐냐”, “시커먼 외국인들이 몰려다녀서 무섭다”, “왜 하필 우리 집 근처냐, 댄 데로 쫓아내라” ...

날마다 무슨 일용할 양식처럼 욕을 먹곤 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바람은 뭐니 뭐니 해도 범죄 위험이다.

관리에 들어갔다. ‘먹고 살 길이 막히면 못된 길에 들어선다.’ 자극히 상식적인 명제에서 출발했으나, 실행은 상식을 뒤집고 또 뒤집어야 했다. 취업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해서 벌어들여야 하는 거다. 그럼 알아서 척척 일자리를 구할까? 여기서 파격이 나온다. ‘제주청이 나서서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이만저만 파격이 아니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고, 남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



취업설명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입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갓가지 진풍경이 연출되었고 진기한 기록들도 낳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교육 시간을 가졌다.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불러 모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느라 많은 애를 썼다.

이번 제주에서의 민관 협업은 의미가 크다. 민간에서 숙소와 생활 지원에 나서 준 덕에 예멘인들의 정착이 빨랐고 그 결과 우려하던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로 뜻한 바를 향해 동행하며 멋진 연대를 이뤘으니 꼭척지고 살 일만은 아닌가 보다.

취업, 교육, 연대. 이 모든 일에는 앞선 이들이 열어 놓은 길도, 건너갈 다리도 없었다. 그리하여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 가면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다.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니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갔다. 값진 경험을 축적한 시간들이다.

미래는 오는 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변용시켜야 할 가능성의 시간이다. 예측과 계획, 실천으로 구현하는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우선, 피드백 분석을 통한 정책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제주청이 시행한 정책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이번의 경험에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황은 분석에만 그칠 게 아니라 한국에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즉 위기를 비추어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 예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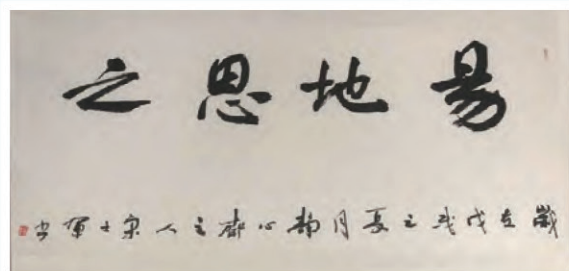
전의 여파가 제주에까지 미칠지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나. 하지만 이제는 예측하고 계획해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 정착을 위한 노력도 우리의 몫이다.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국가적 이슈는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 속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견을 좁혀가는 설득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제주청 복도에 걸려 있는 액자의 글귀다.

관점이나 사고의 틀에 따라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내 눈과 귀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눈과 귀로도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고, 남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는 명심보감의 한 구절과 뜻이 닿아 있다. 우리는 과연 이 충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책을 마치며

“백서를 쓰라 하십니다!”

심사과장이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슬쩍 귀뜸해 준다. 공항 회부심사가 한창일 때다.
 컷등으로 흘러들었다. 책은 아무나 쓰나!
 7월 어느 날. 이번에는 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백서 준비 잘 돼 가나요?”
 뜨끔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발뻘하다, 결국 한번 해 보겠다고 객기(?)를 부렸다.

미치면(狂) 미친다(及)고, 귀 기울이고 살피니 모두가 글감으로 보였다. 최선을 다했다. 20여 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이렇게 덮어 놓고 열심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지만,
 미천한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다.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작업에 동참한 공항팀의 김00은 휴일도 마다않고 통계
 작성과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난민심사팀은 백서의 산실이다. 직원들은 자료정리와
 그 외의 자잘한 일들을 도맡았다. 특히 정00은 자료를 그림과 그래프, 표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집필에 참여한 이00은 사진자료와 연대기, 참조기록을 보기 좋게 편집하여
 내용을 알차게 꾸며주었다. 함께 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내전을 피해 제주로 대거 몰려온 예멘인들은 단박에 이슈메이커가 되었고, 제주청은 난민 컨트
 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말 즈음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다.

핵심 키워드는 예멘 난민과 제주청이고, 연관단어는 이슈와 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예멘 국가
 정황, 제주로 오게 된 배경과 과정, 쟁점이 된 이슈,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제주청이 펼친 정책
 과 난민심사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내려고 애썼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나친 게 많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내려올 때 본 게 그나마 위안이다. 부지런히 두리번거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았다.
 새로이 난 길에 핀 상생의 꽃을.



난민 수용을 놓고 우리 사회는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주청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법과 원칙. 칭찬을 들을지 욕을 먹을지 보다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의 판단을 앞세우라는 성현의 말씀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출입국 60년사에 굵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책으로 남긴 기록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백서는 발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백서가 출입국이 펴내는 단일 사건 최초의 기록물이 된다. 예멘 난민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였다. 일어난 사실들을 서사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연대기로 따로 정리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빠 날뿔 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제주청이 먼저 치른 난민 시험문제가 있다. 이 책을 기출문제 삼아 예상 문제를 뽑기 바란다. 그리고 치른 시험은 여기에 보태어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

난민팀장 최00

부지런히 두리번거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았다.
새로이 난 길에 핀 상생의 꽃을.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YEMEN
SANAA

MALAYSIA
KUALA LUMPUR

KOREA
JEJU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부록

언론 설명(보도)자료

참고자료

언론 설명(보도)자료

 법무부		 보도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18. 6. 19.(화)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 관련 설명자료

상기 제하의 한국일보 인터넷의 6월 16자 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하고자 합니다.

- ① 제주도에 발이 묶인 예멘인 500여 명이 한 달 만에 노숙인 신세가 되었다는 것과 관련,
 - '18.6.15. 현재,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 491명은 도내 호텔 등 다수 숙박업소에 나누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청 및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에 대해 취업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취업 지원을 하는 한편, 식자재 제공 및 의료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을 통해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② 난민신청자 100명 중 단 3명도 제대로 된 난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
 - '18.5월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이 난민심사를 종결하였고, 그 중 난민인정자는 839명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1,549명으로 난민인정률*은 4.1%, 난민보호율**은 11.7%임.

* 난민심사종결자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UHCR 등 산출방식)

** 난민심사종결자 대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비율(UHCR 등 산출방식)

③ 미등록체류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임시체류 비자(G-1) 조차 주지 않아 생계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

- 불법체류 상태에서 난민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1년 이상 불법체류 중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난민심사 종결 시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④ UN 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보호율은 100위권 밖이라는 것과 관련,

- 난민인정률(또는 보호율)은 각 국가의 이민정책, 난민 발생지로부터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요인, 난민발생국가와 수용국가의 역사적 관계, 국가의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난민인정률(또는 보호율) 수치만으로 어떤 나라의 난민정책을 평가하기는 곤란함
- 또한, 국가별 난민인정률(또는 보호율) 순위를 통일적·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UNHCR포함)은 없음.

 법무부		 보다 나은 정보	설 명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18. 6. 20.(수)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최근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급증 문제로 인하여, 관련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쟁점 사항〉

1. 난민 증가로 인하여 치안이 위험하고, 국민 일자리가 잠식된다.
2. 난민 1명당 매달 생계비 138만원을 지급하는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과다하다.

【난민실태】

- 올해 들어 '18.6.14.까지 제주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들 549명 중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며, 17세 미만자는 26명, 18세 이상자는 523명입니다.
 - 예멘인들은 '17.12월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이 취항(주 4편)한 이후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

① 치안 위협 및 일자리 잠식 관련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설명회 등 계기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외국인간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에 대해 국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난민신청자의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임신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18년 1~4월간 난민신청자 5,436명 중에서 485명이 생계비를 신청하였고, 그 중 325명(생계비 신청인원 대비 지급율 67%)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생계비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432,900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긴급 지원액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생계비 지원액]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원센터 비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지원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생계비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하며,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을 지급

- 한편,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이 있으나, 이 또한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거시설의 지원의 경우,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수용인원 82명, 인천시 중구 영종도 소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항목(결핵, 매독, 에이즈 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난민 무차별 유입 우려 관련

-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최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의 존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 무사증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예멘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여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 (난민심사) 법무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및 아랍어 전문 통역인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 (치안활동)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이들이 취업할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 생활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착지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취업 및 생활 현장에서 고용주 등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취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 (출도제한)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무부		 보다나온 정보		설 명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18. 6. 25.(월)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 난민 심사의 빈틈」 관련 설명자료

상기 제하의 조선일보의 6월 25일자 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①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 ①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②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서도 불인정결정이 난 경우에는 ③행정소송(1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④항소(2심) 및 ⑤상고(3심)할 수 있으므로 총 5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소송에서 패소한 사람 포함)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횡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심사가 대부분 1차로만 끝난다며 현재 3회인 심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
 - 미국과 유럽 등에서 1차로만 난민인정심사를 끝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준사법절차에 의해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별도 기관에서 불복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신속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일 수 있는 불복절차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내 난민보호과와 난민항소과를 두고 있으며, 1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보호과의 결정에 대해 난민항소과에서 이의신청을 접수·심의
- * (독 일) 난민이민연방사무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단계(행정법원 → 고등행정법원 → 연방 행정법원)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음.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바로 법원에 불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의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는 없음.
- * (영 국) 법무부 산하 이민난민심판소에서 이의신청 업무 담당
- * (덴마크) 1차 심사는 이민국에서 담당하며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난민심사의 최종 단계인 난민심판원으로 자동적으로 사례가 이송됨.
- * (호 주) 행정항소심판소의 이민난민과에서 난민 이의신청 전담
- * (미 국)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행정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담당

○ “현재 3회인 심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절차 단계의 통합이 아니라, 해외 사례와 같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신속한 절차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가칭, 난민심판원)을 설치하고, 동 심판원의 결정을 1심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법무부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2018. 6. 29.(금)					
배포일시	2018. 6. 29.(금)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 그간의 경과

-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
 -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한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연도별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

합계	94~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
982	38	130	39	92	131	552

※ 2018(1월~5월) 난민신청자 552명 중 제주 입국 난민신청자는 527명

-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 30.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조치 하였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 1.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 하였습니다.
 -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②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

-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여,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③ 엄정·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 하겠습니다.
 - 따라서,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향후 대응방안

-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습니다.
-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협조 말씀

-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라며,
 -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도자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18. 7. 5.(목)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순조롭게 진행
< 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
 -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고용주 등에 대한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2018. 7. 4.(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서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 간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추후 수시 제공 예정)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진행 상황

- 7. 2.(월)부터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보강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난민업무를 담당하면서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직원 10명은 난민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 난민심사 직원 5명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2~3개월 정도면 심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질서 및 문화이해 교육 등 실시

- 법무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법질서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내용은 아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멘인에 특화된 사회통합교육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고용주에 대해서도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먼저, 예멘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수협 전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영상을 각 고용주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 중

-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7. 4.(수)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난민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제주도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알선, 숙소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 간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며, 추후 수시로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확인 목차 〉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근거
2.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행기로 왔다는데
3. 말레이시아를 거쳐 온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4. 난민에 대한 지원이 6·25 참전용사 연금보다 많다는데
5. 예멘인의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는데
6.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7. 출도제한조치 배경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고 하는데
10. 제주에 난민심사 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11. 난민 신청이나 통지가 한글과 영어로만 되어 있다는데
12. 난민으로 전염병 등 국민의 보건이 위협받을 우려는 없는지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받고 있는지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Q & A 목차

01.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0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03. 말레이시아를 거쳐 온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0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 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05.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06.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0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0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0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고 하는데
 10. 제주에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 절차를 어렵게 하고 다는데
 12. 난민으로 전염병 등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지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과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서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어 제주 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하였음
-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
-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이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 사실과 다름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 2018년 생계비 예산 : 8억1천7백만 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2,900원(센터입주자 216,450원)임
 - ※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택을 받음

5. 현지 및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이라면 난민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범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하였고, 허위 난민신청자 1,474명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음
- 또한,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 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님

6.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4. 30.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민신청한 모든 외국인인에 대하여 출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임
- 아울러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하여는 범죄 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 취업허가, 취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인력과 통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한해 미국은 약 23,000명, 독일은 약 256,000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하였음
 -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부도 해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 우리나라 난민통계 ('94 ~ '18.5. 현재)
- 총 신청자 40,470명 (심사 중인자 15,777명 / 인정자 839명 / 인도적체류자 1,540명)
 - 전체 보호율 11.7% (난민인정율 4.1% / 인도적체류율 7.6%)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임
- ※ '16. 9. UN의 뉴욕선언을 배경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
- 미국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

10.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도에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임
- ※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15년부터 총 6개 언어 (한글,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우르드어)로 된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유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한글·영문을 병기하여 통지하고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음

12. 제주도 예멘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전염병 등으로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시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시 법정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금번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도 모두 난민신청 시 보건소, 복심자의원, 한국건강 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17년 체류외국인 수가 '16년보다 약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및 경찰청 자료)
 - ※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 43,764명('16년) → 36,069명('17년), 전년 대비 7,695명 감소
 - ※ 체류외국인 현황 : 2,049,441명('16년) → 2,180,498명('17년), 전년 대비 131,057명 증가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가

- 법무부는 '03.12월 폐지된 체류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를 '10.8월부터 등록외국인 뿐만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외국인의 십(10)지문 및 얼굴 정보는 우범 외국인 입국방지 및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금번 난민신청자의 경우도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신청시 지문날인을 다 받았음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사실임
-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예멘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반한 사춘이 간호하고 있음
- 환자인 점을 고려한 인도적인 측면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법무부는 '15. 2. 16.부터 입국규제자 등 우범자를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운영 중임



 법무부		 보다원은 정반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7. 10.(화)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당자	구병모 사무관	

법무부 차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현장 방문
- 엄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 지시, 원희룡 지사와 난민 현안 협력방안 논의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10.(화) 제주도를 방문, 예멘인 난민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지사와 난민 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법무부 차관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예멘인에 대한 난민심사 면접 과정을 참관한 후, 난민심사관들을 격려하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심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알선, 숙소 및 의료지원 등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을 방문하여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내·외국인 간 불필요한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주이주민센터도 방문하여 센터 관계자와 예멘인 난민신청자 대표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다 나은 정보	설 명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8. 23.(목)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증가세 · 이슬람 · 두려움 · 혈세낭비」 관련
설명자료

위 제목의 세계일보 8월 22일자 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①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한달에 43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음(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자산, 주거, 자녀동반 또는 임신 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지급하게 됨
 - ※ 2018년 생계비 예산은 8억 1천7백만 원이며, 금년 7월말까지 전체 난민신청자 10,638명 중 생계비 신청자는 1,305명이었고, 그 중 467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였음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기준 432,900원(센터입주자 216,450원)임
 - ※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난민신청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② “난민신청자의 지위 자체로도 난민법에 의해 수많은 혜택(변호사의 조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다만,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법무부에서 「난민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9. 14.(금)		담당부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담당과장	강영우 과장		담 당 자	이은경 팀장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1차 발표
 - 엄정한 신원검증을 통해 법질서 준수 조건부 임시 체류허가 결정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18.9.13. 현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에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이번에 심사결정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입니다.
-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 그리고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참고로 미국은 '17.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사업·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난민은 제한 예외대상)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는데, '18.7.5.에는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7.5.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Release Date : July 5, 2018

... Secretary Nielsen determined that the ongoing armed conflict and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that support Yemen's current designation for TPS continue to exist. Therefore, pursuant to the statute, she has extended Yemen's TPS designation for 18months. Individuals from Yemen with TPS will be eligible to re-register for an extension of their status for 18 months, through March 3, 2020. ... There are approximately 1,250 Yemeni TPS beneficiaries, ...

(원문 별첨)

*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무장분쟁, 환경재난, 비정상적인 일시적 상황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지정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기존의 난민협약에 의하여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국의 국내법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보완적 보호 등의 형태로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화,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화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는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한편,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또한,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현재 멘토 73명 확보)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미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18. 7월 중 5일간, 8월 중 4일간)에 걸쳐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약 460여명에 대해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진 별첨)
-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는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화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10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다나은 정보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10. 17.(수)			담당부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담당과장	강영우 과장			담 당 자	이은경 팀장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1. 심사 결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14.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고,
 -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 불인정결정을 하였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제사회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법 및 관습법에 따라 협약 상 난민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영국의 인도적 보호(Humanitarian Protection),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Significant harm)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캐나다의 인도적인 근거를 이유로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Pre-Removal Risk Assessment) 등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 국가들도 예멘인에 대한 보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도 '17.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사업·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난민은 제한 제외대상)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 '18.7.5.에는 위 1,250명 전원에 대하여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3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2. 심사 결과 후 후속 조치

- 이번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 *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현재 73명 멘토 위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미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18. 7월 중 5일간, 8월 중 4일간)에 걸쳐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약 460여명에 대해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 단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하여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12. 14.(금)	담당부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담당과장	강영우 과장	담당자	이은경 팀장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

1. 심사 결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난민 인정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으로부터 납치와 살해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어,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9.14.)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과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과 단순불인정 34명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
-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자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심사 대상자 중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 신원검증을 거친 다음 난민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내전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 하였습니다.

〈 참고 : 미국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

- ◎ 미국의 경우에도 '17.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 (사업·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난민은 제한 예외 대상)하고 있으나,
- ◎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 '18.7.5.에는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18.7.5.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하지만,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 하였습니다.

2. 심사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 이번엔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 시 처벌 가능)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 *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18.12.5.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체류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 국내 정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언어소통 부족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참고자료

1. 제주도청 예멘 난민 Q&A 자료

**에멘 난민 관련
설명자료 Q&A**

Jeju 제주특별자치도

“ ”
목 차

Q1. 왜 제주에 갑자기 난민문제가 발생하였는지?	5
Q2. 이번 예멘인 난민신청 증가가 제주무사중재제로 인한 것인지?	5
Q3. 예멘인 난민신청 이후 행정적으로 조치된 내용은?	6
Q4.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신청절차는?	6
Q5. 예멘인들이 집단거주하여 도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Q6. 예멘인 난민관련 향후 제주도의 계획은?	8
Q7.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는?	8
Q8.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받아줄일 것인지?	9
Q9. 제주무사중 재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10
Q10.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될 경우 출도제한이 해제되는지?	10
Q11. 난민 심사 후 이들의 거처에 대하여는?	10
Q12.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은 진짜 난민인지?	11
Q13.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외국인 밀착도 늘어나는지?	11
Q14. 이슬람, 무슬림 종교관련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여성비하, 무차별적인 성범죄 등? 사실인지?	12
Q15.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인지?	14

“ ”
목 차

Q16. '정난입자'라도 보자면, 난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14
Q17. 예멘인 난민들이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잘 활용 할지는 없는지?	14
Q18. 난민들이 버스정류소에서 여자들에게 조롱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4
Q19. 거주생활수급자보다 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14
Q20. 가짜 난민에 대하여 징벌 주할 수 있는지?	14
Q21. 출도제한조치 행정?	14
Q22. 출도제한으로 난민이 줄어는 것에 대한 대응은?	14
Q23. 현재 및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16
Q26. 제주도 예멘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한일평 등 도민의 보건에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16
Q25.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지?	17
Q26. 난민 중 외국인의 자원을 남용 하고 있는지?	17
Q27. 제주도에 예멘 난민 소속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18

(참고) 난민관련 용어정리

“ ”
에멘 난민 관련 설명자료

Q1 왜 제주에 갑자기 난민문제가 발생하였는지?

▶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549명 (8.14. 기준)으로 예전과 비교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 2015년부터 시작된 내전들 이유로 하여 주로 제3국에 체류하던 이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왕공사의 제주직왕노선인 2017. 12월부터 취항하지 말레이시아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난민법 제도와 무사중 재도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Q2 이번 예멘인 난민신청 증가가 제주무사중재제로 인한 것인지?

▶ 예멘인들의 경우에는 제주무사중재제를 이용하여 양국 난민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2013년 7월 난민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신청이 증가하여

- 2014년 2,80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에는 6월 말 기준 9,27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전문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8. 6. 25.부터 심사한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 난민신청을 철회 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 14명으로 발표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 4.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 난민협약 제19조(난민 인정의 제한)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겪어왔던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 규정도 취업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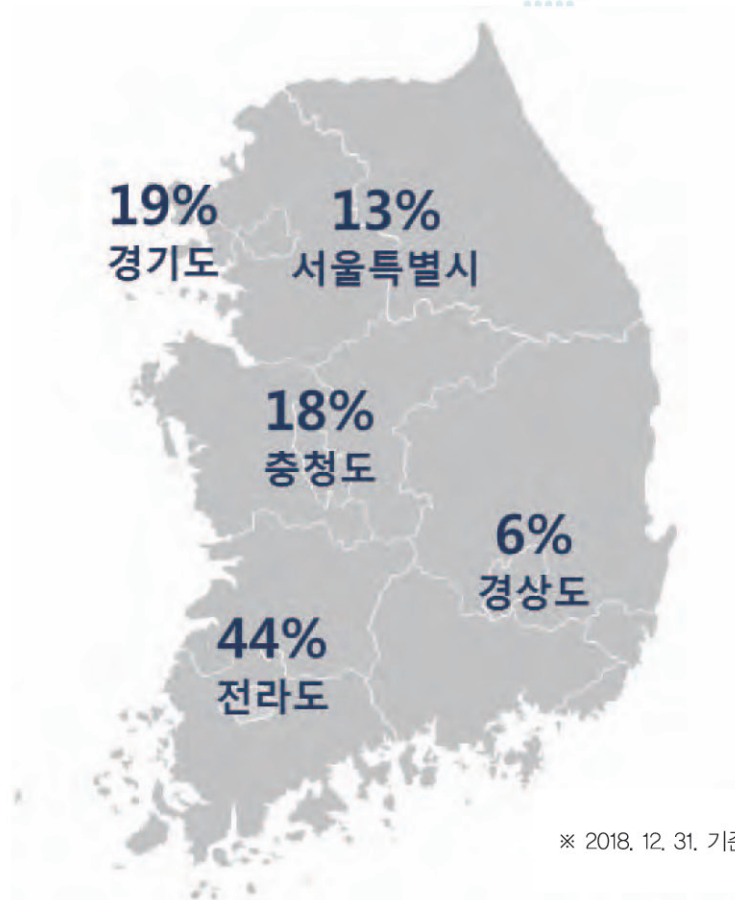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3. 2018년 말 기준 출도자 지역별 현황

예멘인 출도자 분포도



4. 제주로 서울로 오간 인사들

• 제주로

김성인 난민인권센터(서울) 전 사무국장	2018. 05. 24. '제주 예멘난민대책위원회' 조직
UNHCR 친권대사 배우 정우성	2018. 06. 2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참석, 예멘 난민 관심 호소
강경화 외교부장관	2018. 06. 2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참석,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예멘 난민문제 협력 방안 논의
슈에레브 주한 교황대사	2018. 07. 28. 예멘 난민숙소 방문, 제주 교구에 프란치스코 교황 자선금 1만유로 전달
프랭크 래무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권한대행	2018. 12. 05. 예멘난민 관련 관계기관 방문, 감사인사 전달 및 지원 당부

• 서울로

원희룡 제주지사	2018. 06. 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
그란디 UNHCR 대표	2018. 10. 23. 강경화 외교부장관 예방 제주 예멘 난민사태 등 전 세계 난민 협력방안 논의
UNHCR 친권대사 배우 안젤리나 졸리	2018. 11. 04. 박상기 법무부장관 예방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감사 표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2018. 12. 14. 광화문 등지에서 난민 반대 기자회견 개최
켈리 클레멘츠 UNHCR 부대표	2019. 02. 12. 여성기업인들과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관련 의견 교환

5. 제주지역 난민 지원 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협의회	• 도내 33개 단체 연합으로 결성 • 난민 인권과 처우에 관한 계획 수립·집행 • 이의신청, 소송 대리 및 숙소와 의료지원
제주 이주민센터	• 노숙인과 미취업자 60여 명에 숙소제공 • 도내 사업자와 연계해 취업 알선 • 관내 병원 네트워크로 무료 진료 안내 • 한글교실 운영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 나옴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활동에 참여 • 예멘인 가족 위주 숙소 제공(7개 거처) • 식자재 창고를 만들어 식료품 지원 • 의료서비스와 한글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 무료급식 및 숙소 제공 • 300명이 7일 동안 식사할 수 있는 양의 식재료(밀가루, 감자, 빵) 지원 • 호텔 투숙 난민 170여 명에 식자재, 구급약 공급 및 무료 진료 실시
월드휴먼브리지	예멘 난민 긴급 생계지원금 5천만원 제주이주민센터에 전달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예멘 난민 후원금 1천만원 제주이주민센터에 전달
글로벌 이너피스	• 도민 성금으로 구매한 생필품 전달 • 회원 사무실을 난민 임시거처로 제공
불교대책 위원회	• 위원들 성금으로 숙소 지원 • 생필품과 식료품 제공
늘푸른교회 예평교회	• 무료 숙소제공 • 한글교실 운영
광주후원개발 네트워크	난민 아동가정에 후원금, 장난감, 의류 지원
00펜션	무료 숙소제공(최대 12명 수용)
00업체	무료 숙소제공(오피스텔 3채 제공)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인쇄일	2019년 9월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전화	02) 2110-4160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 02) 2285-5278